

부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5월 4일 부천시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5년 5월 6일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05년 5월 17일)
 -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제안이유

-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쓰레기 수거 이후에
는 거리에 쓰레기가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규정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가능폐기물 배출시간을 평일에는 오후 8
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토·일요일은 토요일 오후 6시부
터 일요일 오후 8시까지, 휴일은 휴일 전날 오전 6시부터 휴일
이 끝나는 날 오후 8시까지 지정된 장소와 용기에 담아 배출하
도록 정함.(안 제7조의2 신설)
-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 위원중 공무원 5인을 1인으
로 하고, 소각시설의 장은 제외함.(안 제15조의2제2항)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p>○ 상가주변 오피스텔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p> <p>○ 쓰레기 배출시간에 대한 정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보는데?</p> <p>○ 쓰레기 놓는 거점이 없어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시에서 쓰레기 놓는 장소를 정하여 버리도록 하면 안되는지?</p> <p>○ 이 조례와 관련 입법예고하고서 의견이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까?</p> <p>○ 경기도내 쓰레기 정시 배출제를 시행하고 있는 시는 몇 군데나 되는지?</p> <p>○ 본 조례안 공포 즉시 시행한다면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p>	<p>○ 이러한 문제가 있어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들이 쓰레기 배출시간을 인지하여 내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p> <p>○ 심들에 대한 홍보를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오피스텔 등 상가 지역은 엘리베이터 등에 홍보물을 게재하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p> <p>○ 현실적으로 공감은 하지만 시에서 일일이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관행적으로 버렸던 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p> <p>○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p> <p>○ 경기도내에는 평택시가 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종로구를 제외한 전지역이 하고 있습니다.</p> <p>○ 특별히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행한다 해도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며 어떤 제도든 약간의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p>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 위원의 임기가 금년 7월이면 만료가 되는데 임기 만료로 인한 위원 재구성시 환경단체나 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봄.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제384호
의결 연월일	2005. 5. 19 (제119회)

제안년월일 : 2005년 5월 18일

제안자 : 행정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구성과 관련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단체 관계자를 증원하고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재활용사업자를 새로이 위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수정.

2. 주요골자

-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구성원을 “협의회는 폐기물과 관련 있는 공무원 1인, 학계전문가 2인, 시의회폐기물관리업무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인, 환경단체 3인, 시민대표 3인,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2인, 재활용사업자 1인”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안 제15조의2 제2항)

부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제15조의2 제2항(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설치)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협의회는 폐기물과 관련 있는 공무원 1인, 학계전문가 2인, 시의회폐기물 관리업무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인, 환경단체 3인, 시민대표 3인, 소각장 주민지원협의회 위원 2인, 재활용사업자 1인”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5조의2(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설치) ①(생략)</p> <p>②협의회는 폐기물과 관련 있는 공무원 5인, 학계 전문가 2인, 소각시설의 장 1인, 시의회폐기물 관리업무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인, 환경단체 2인, 시민대표 3인으로 구성한다.</p>	<p>제15조의2(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설치) ①(현행과 같음)</p> <p>②----- 공무원 1인, 학계전문가 2인 ----- ----- ----- ----- -----.</p>	<p>제15조의2(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설치) ①(개정과 같음)</p> <p>②협의회는 폐기물과 관련 있는 공무원 1인, 학계전문가 2인, 시의회폐기물 관리업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인, 환경단체 3인, 시민대표 3인,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2인, 재활용사업자 1인으로 구성한다.</p>

[수정안 포함]

부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를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생활폐기물 배출시간)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지정된 시간에 배출하여야 한다.

1. 배출시간 :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2. 배출금지시간

가. 토·일요일 :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일요일 오후 8시까지

나. 휴일 : 휴일 전날 오전 6시부터 휴일이 끝나는 날 오후 8시까지

제15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협의회는 폐기물과 관련 있는 공무원 1인, 학계전문가 2인, 시의회 폐기물 관리업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인, 환경단체 3인, 시민대표 3인, 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 위원 2인, 재활용사업자 1인으로 구성한다.

제1조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하고, 제2조제2호

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을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하며, 제20조제1조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법」”으로, “자연공원법”을 “「자연공원법」”으로, 동조 제2항중 ““등산로, 유원지쓰레기통설치·관리규정””을 “「등산로, 유원지쓰레기통 설치·관리 규정」”으로 하고, 제22조제1항제1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부천시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u></p> <p><u><신 설></u></p>	<p><u>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u></p> <p><u>제7조의2(생활폐기물 배출시간) 쓰레기</u> <u>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및</u> <u>재활용가능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지정</u> <u>된 시간에 배출하여야 한다.</u></p> <p><u>1. 배출시간 : 오후 8시부터 다음</u> <u>날 오전 6시까지</u></p> <p><u>2. 배출금지시간</u></p> <p style="padding-left: 2em;"><u>가. 토·일요일 : 토요일 오전 6시</u> <u>부터 일요일 오후 8시까지</u></p> <p style="padding-left: 2em;"><u>나. 휴일 : 휴일 전날 오전 6시부터</u> <u>휴일이 끝나는 날 오후 8시 까지</u></p>
<p>제15조의2(쓰레기 문제해결을 위 한 시민협의회 설치) ① (생 략) ②협의회는 폐기물과 관련있는 공무원 5인, 학계전문가 2인, 소 각시설의 장 1인, 시의회폐기물</p>	<p>제15조의2(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 1인, 학계전문가 2인, 시의회 폐기물 관리업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인, 환경단체 3인, 소각장주민</p>

현행	개정안
<p>관리업무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인, 환경단체 2인, 시민대표 3인</p>	<p>지원협의체 위원 2인, 재활용사업자 1인,</p>
<p>으로 구성한다. ③ 및 ④ (생략)</p>	<p>-----. ③ 및 ④ (현행과 같음)</p>